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구 미 시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6. 9.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경상북도에서는 교역자유화(FTA) 확대 등에 따른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 농수산업의 육성과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도모하고자 농어촌진흥기금을 조성하여 용자 지원하고 있음 이에 출연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17회계연도 구미시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하는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자·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 개요

- (1) 기금명 : 2017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 (2) 주관기관 : 경상북도
- (3) 조성근거 :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4) 출연예정액 : 금284,000천원(시비 284,000천원)
- (5) 조성기간 : 1993년 ~ 2017년
- (6) 재원 : 도, 시·군, 농·수협 등의 출연금 및 운영수익

※ 출연근거 : 기관별 출연액 협의결과('07. 6. 18, 도 FTA농수산대책 회의)

나. 사업내용

(1) 사업금액 : 2,158백만원('17년도 구미시 배정금액)

(2) 사업대상

- 도내 주소지를 두고 농수산업을 영위하는 농어업인, 농어업인 단체, 농어업법인, 농어업관련기업체 또는 농·수협 등

(3) 지원사업

- 농어촌 소득증대 사업 -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특산물개발사업
- 농어업시설의 구조개선 - 신기술개발 지역특화사업 육성지원
- 농수산물 수출육성 지원사업 - 농수산물 직판사업 및 산지 매취사업
-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사업 - 농수산물 가공 및 유통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4) 지원기준 및 조건

- 지원한도액 : 2억원 이하(개인), 5억원 이하(법인)
- 지원형태 : 융자지원 100%
 - 운영자금 : 연리 1.0%,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시설자금 : 연리 1.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5) 사업추진절차

- '16. 8월 : 사업지원계획 시달(도)
- '16. 8~9월 : 사업대상자 모집 및 사업신청(시)
- '16. 12월 : 사업대상자 선정 및 승인(도)

- '17. 1~12월 : 사업추진 및 사업완료확인신청(사업자 ⇒ 시)
- '17. 1~12월 : 사업완료확인서 발급(시)
- '17. 1~12월 : 융자실행(금융기관)

다. 출연현황 및 지원실적

(1) 구미시 출연현황

(단위 : 백만원)

기관별	'93~'16 출연실적	'16년 출연액	'17년 출연계획	비고
구미시	5,056	284	284	

(2) 경상북도 출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4년까지	'15년	'16년	'17년
재 원 별	계	207,817.2	179,717.2	9,700	9,300	9,100
	도	48,393.4	40,893.4	2,500	2,500	2,500
	시·군	85,200	71,700	4,500	4,500	4,500
	농·수협등	18,075.3	15,075.3	1,000	1,000	1,000
	운영수익	56,148.5	52,048.5	1,700	1,300	1,100

(3) 연도별 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96-'09	'10	'11	'12	'13	'14	'15	'16
농가수(호)	213	135	5	8	8	29	9	7	12
융자금액	20,404	12,166	815	865	742	1,651	1,390	795	1,980

마. 출연의 필요성

- (1) 한·미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지역 농업의 충격완화
및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93년부터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
- (2) 기관별 출연액 협의결과('07. 6. 18, 도 FTA농수산대책회의) 근거
지역의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기금 출연 필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재정법」 제18조
- (2)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

나. 예산조치 : 2017년도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 (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 및 농·수협 등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농어촌 투·융자 재원 등 국고지원금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4. 기타 기금운용 수익금

② 도지사는 제1항 제1호에 의한 도출연금을 매회계연도마다 일반세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소관 실 · 과		농정과
입 안 자	과 장	이 형 근
	담 당	강 의 규
	담 당 자	차 명 규 (480-5763)